

양주고음 휴먼시아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

Ⅹ 건설위치 : 경기도 양주시 고음동 고음택지개발지구내 4, 5블럭 국민임대주택 861호 (4블럭 330호, 5블럭 531호)

Ⅳ 임대대상 및 조건

단지 (블럭)	공급 형별	세대당 계약면적(㎡)						공급호수			해당동	임대조건				구조 및 난방	입주 예정
		공급면적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합계	계	우선 공급	일반 공급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전용	주거 공용	계								계	계약금	잔금			
4	69㎡	46.90	23.0246	69.9246	2.8746	13.9565	86.7557	123	76	47	404~405	17,900	3,580	14,320	122,000	벽식, 지역 난방	2010 년 6월
	77㎡	51.93	25.4940	77.4240	3.1830	15.4533	96.0603	207	132	75	401~403	21,900	4,380	17,520	150,000		
5	69㎡	46.90	23.0467	69.9467	2.1584	12.9607	85.0658	225	142	83	505~507	17,900	3,580	14,320	122,000		
	77㎡	51.93	25.5185	77.4485	2.3899	14.3508	94.1892	306	196	110	501~504	21,900	4,380	17,520	150,000		

※ 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입니다.

Ⅴ 신청자격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08.9.30) 현재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월평균소득 2,572,800원이하 (단, 4인 이상 세대의 경우 2,818,440원이하) * 월평균소득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며, 4인 이상 세대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4인이상인 세대를 의미함
토지	개별공시지가 기준 5,000만원이하 * 지적법에서 정한 14개 지목(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을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200만원이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 * 비영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원부상 장애인 사용자자동차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신청자 유의사항!

- ※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우선공급 신청자의 경우 상기 신청자격 외에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수도권) 거주자로서 ②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③ 그 기간에 출산(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으며 ④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인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이상 납부한 자만 신청이 가능 ('09.1.1 이후부터는 12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 ※ 당해 국민임대주택은 신혼부부 우선공급으로 당첨이 된다하더라도 당첨자로 전산관리되지 않으며, 추후 다른 소형분양, 공공임대 및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재신청 가능함
- ※ 단, 수도권지역(서울·경기·인천)은 하나의 주택건설지역으로 보되, 동일순위 경쟁시 당해 주택건설지역(양주시)거주자가 우선함
- ※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우선공급 신청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표상 분리된 배우자의 소득 및 자산(토지, 자동차 가액)도 합산하여 입주자격을 판단함
- ※ 혼인 기간은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재혼 역시 포함됨(단 재혼 후 출산한 경우에만 신청가능)
- ※ 출산은 가족관계등록부 및 등본상 출생일로 판단하며, 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 신고일이 적용됨

공급일정

구분	신청자격		신청접수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장소 (신청접수, 당선자발표, 계약)
	신청세대 월평균소득	순위				
전용면적 50㎡미만	2,572,800원이하(단, 4인 이상 세대는 2,818,440원이하)	우선순위	'08.10.7 (10:00~17:00)	'08.10.20 (15:00)	'08.11.18~20 (10:00~16:00)	의정부주택전시관 (1호선 회룡역에서 서울방향 도보5분)
	1,837,710원이하(단, 4인 이상 세대는 2,013,170원이하)	1·2·3순위	'08.10.8 (10:00~17:00)			
	1,837,710원 초과 2,572,800원이하(단, 4인 이상 세대는 2,013,170원초과 2,818,440원이하)	1·2·3순위	'08.10.9 (10:00~17:00)			
전용면적 50㎡이상	2,572,800원이하(단, 4인 이상 세대는 2,818,440원이하)	우선순위	'08.10.7 (10:00~17:00)			
		1·2순위	'08.10.8 (10:00~17:00)			
		3순위	'08.10.9 (10:00~17:00)			

※ 신청접수는 신청자격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하지 않음.**

※ 신청계약 장소인 의정부주택전시관은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선정

■ 일반공급

구분	입주자선정 방법
전용면적 50㎡미만	<p>월평균소득이 1,837,710원(단, 4인 이상 세대는 2,013,170원)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월평균소득이 1,837,710원초과 2,572,800원(단, 4인 이상 세대의 경우 2,818,440원)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단,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p> <p>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양주시에 거주하는 자</p> <p>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두천시, 연천군, 파주시, 고양시, 의정부시, 포천시, 서울시 도봉구·강북구에 거주하는 자</p> <p>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p> <p>※ 거주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하되 신청접수일까지 지속적으로 거주한 자에 한하여 해당지역 거주자로 봄</p>
전용면적 50㎡이상	<p>아래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 순위내 경쟁시에는 양주시 거주자(공고일 현재부터 신청시 까지 지속적으로 거주)에게 우선공급</p> <p>①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p> <p>②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p> <p>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p> <p>※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p>

■ 우선공급

구 분	입주자선정 방법
사업지구 철거민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4항)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한 (단,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5항)	<p>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에게 일정한호수를 우선공급</p> <p>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부양여부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함)</p> <p>②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포함)</p> <p>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에서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한 자</p> <p>④ 북한이탈주민</p> <p>⑤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청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p> <p>⑥ 민법상 미성년(만20세 미만)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자</p> <p>⑦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p> <p>⑧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p> <p>⑨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65세이상 고령자</p>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주택공급규칙 제32조6항)	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영구임대주택 계약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세대주에게 일정한호수를 우선공급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7항)	⑪ 행정안전부장관이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임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한 자 및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중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8항)

구 분	입주자선정 방법
입주자 선정순위	<p>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혼인기간에 따라 순위를 정함</p> <p>①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자</p> <p>②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자</p>
동일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p>동일순위내 경쟁시 아래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p> <p>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양주시)의 거주자</p> <p>② 자녀 수가 많은 자 * 재혼시 전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 포함(동일순위내 경쟁시에만 적용됨)</p> <p>③ 자녀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p>

※ 우선공급 배정호수

단지 (블럭)	공급 형별	공급규칙 제32조 제4항	공급규칙 제32조 제5항							공급규칙 제32조 제6항	공급규칙 제32조 제7항	공급규칙 제32조 제8항 (신혼부부)
			계	노부모부양, 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 유공자	중소기업 근로자	3자녀이상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4	69㎡	-	22	6	3	3	2	2	6	6	12	36
	77㎡	-	40	10	6	6	4	4	10	10	20	62
5	69㎡	-	42	11	6	6	4	4	11	11	22	67
	77㎡	-	60	15	9	9	6	6	15	15	30	91

· 우선공급신청자가 배정호수를 초과할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의한 순위 및 배점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순위에 의함)

■ 동일 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제1,2,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각 호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대로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구 분	3점	2점	1점
① 세대주 나이	50세 이상	40세 이상	30세 이상
② 부양가족수	3인 이상	2인	1인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
④ 미성년자녀수(만20세미만)	3자녀이상	2자녀이상	-
⑤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3점			
⑥ 중소기업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⑦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로부터 1년이상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를 교부받은 건설근로자 : 3점			
⑧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3점 (전용면적 40~50㎡미만 신청자만 해당)			
⑨ 청약저축 추가납입회수 (전용 50㎡이상주택 신청자만 해당) 가.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횟수보다 12회이상 추가납부자 2점 나.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횟수보다 6회이상 추가납부자 1점			
⑩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중 청약저축가입자 : 3점 (전용 50㎡이상주택 신청자만 해당)			

- ※ ⑤,⑥,⑧,⑩의 가점은 주택공급규칙 제32조제5항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시에는 적용 제외
-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하며, 세대분리된 배우자와 그 부양가족 포함

⑩ 신청서류

■ 주택을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1통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배우자와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
- 주민등록표초본 1통
※ 양주시 거주자만 해당,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5년이상 당해지역 거주기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발급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두개 이상의 건강보험증에 분리 등재된 경우 각각의 사본 모두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 1통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제출
- 국민주택공급신청서 1통
※ 전용 50㎡이상 주택을 신청하는 청약저축 1,2순위자 및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우선공급 신청자의 경우 가입은행에서 발급
-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가능), 신분증,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서 작성하여 제출)
- 소득입증서류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07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직인날인) 또는 '07년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 해당직장 · 세무서
	'08년 신규취업자	· '08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 재직(취업)증명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07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기준소득월액이 표시되도록 발급)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 소정양식)	· 접수장소

※ 위 기재서류는 일반적인 경우의 소득입증서류 예시이며, 소득입증서류는 개별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항 목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우선공급 대상자	①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세대주와의 관계가 표시되도록 발급)	동사무소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	동사무소
	③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장기복무제대군인	국가보훈처에 신청	국가보훈처
	④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시·군·구청
	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확인서	지방중소기업청
	⑥ 민법상 미성년(만20세미만)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으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가족관계증명서	동사무소
	⑦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동사무소
	⑧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서	시·군·구청
	⑨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중 수급자가 아닌 자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계약사실증명원	해당관리소
	⑩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및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중 주택 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확인각서 (공사 소정양식)	접수장소
	⑪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우선공급신청자 (혼인기간 5년이내, 혼인기간 내 자녀출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동사무소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8입주자 선정참조)	①~②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별도제출 없음)
	③ 당해지역 거주기간	주민등록표초본(당해지역 거주기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발급)	동사무소
	④ 미성년자녀가 2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가족관계증명서	동사무소
	⑤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주소변동사항 포함)	동사무소
	⑥ 중소제조업체 근로자(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해당직장
	⑦ 1년이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증지를 교부받은 자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복지수첩(원본 지참)	건설근로자 공제회
	⑧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 (전용면적 40~50㎡미만 신청자만 해당)	차상위 계층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지자체 (동사무소)
	⑨ 청약저축 추가납입회수(전용 50㎡이상주택 신청자만 해당)	청약저축순위서류로 확인	가입은행
	⑩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저축 가입자 (전용면적50㎡이상 신청자만 해당)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약저축통장 1면 사본	-

①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당첨자 결정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컴퓨터로 무작위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발표 장소에 게시하며, 공사 홈페이지(www.jugong.c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개별통보하지 않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함

■ 계약안내

- 당첨자는 ① 계약금, ② 인감증명서 1통(최근 3개월이내 발행분/ 공급신청자 본인이 직접 계약체결시 주민등록증사본 및 여권사본으로 같음), ③ 인감도장, ④ 신분증을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별도 계약안내를 하지 않음)
- 계약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를 허용함(단, 배우자이외의 자가 대리할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 계약체결 후 해약시에는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②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관련항목	유의사항
㉞ 임대대상 및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샷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①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및 자산소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토지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② 공급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③ 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④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⑩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이후 연락처(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택소유 및 자산소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계약이 취소되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⑩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사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6-36호)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이 주택의 감리회사는 한국건설관리공사이고,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이 주택의 시공업체는 4블럭은 (주)한국종합기술, 5블럭은 태평양개발(주)입니다. 동 택지개발지구내 고등학교(1교)는 2011년 이후 개교 예정입니다. 동 택지개발지구내 주택공급에 따라 설립 계획중인 학교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경기도 부담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부담여부 및 시기 등에 따라 변경(설립시기 연기, 설립계획 보류)될 수 있습니다.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⑨ 노약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노약자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가족 중 만65세 이상 노인, 3급 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 모집시의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분	설치 내용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	지체장애인
욕실	바닥단차 제거, 출입문 규격확대 및 개폐방향 변경, 좌식샤워시설, 좌변기 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정	고령자 지체장애인
	높낮이조절 세면기	지체장애인
주방	가스밸브 높이조정, 좌식 씽크대(물버림대)	지체장애인
거실	비디오폰 높이조정, 바닥센서등	지체장애인
	시각경보기	청각장애인
주동·통로유도시설	음성유도신호기	시각장애인

-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 신청시 필요서류 : 신청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수첩 사본 등
-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함)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부.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주택(주택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무주택판정기준 : 검색대상자중 누구라도 공고일 현재 주택소유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자로 보지 않음.
※주택의 취득·처분일은 건물등기부상 접수일(미등기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 가. 공동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나.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1)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2) 85㎡이하의 단독주택
 -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 다.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라. 개인사업자가 소속근로자의 숙소용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마. 20㎡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
 - 바. 만60세이상인 직계존속 소유주택(단, 직계존속 부양으로 인한 우선공급의 경우에는 제외)
 - 사. 공부상에는 주택이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주택.
 - 아.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임대문의	◆ 의정부 주택전시관 : 031)837-7861~3 ◆ 용산 국민임대주택홍보관 : 02)794-1664~6
인 터 넷	www.jugong.co.kr :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 kookmin.jugong.co.kr : 국민임대주택 전용 홈페이지 www.bogeumjari.com : 보금자리 홈페이지(내집마련을 위한 포털사이트)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